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18

제출연월일 : 2021. 7.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16조제10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5. 20. ~ 6. 9.(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과 사”를 “공(公)과 사(私)”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획득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 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휴가) ① ~ ⑨(생 략) <신 설>	제16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 유지)

① 시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양 기 석